

제 호

[]시정조치 []작업중지 명령서

어선명:

소재지:

전화번호:

「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39조 []제1항 []시정조치
[]제3항 []작업중지
에 따라 다음 대상에
를 명하니 해당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 또는 작업을 재개하기 바라며, 만일 이를
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[]제53조제4호 []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[]제54조 []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.

시정조치 또는 작업중지 대상	
위반내용	

※ 위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
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(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), 「행정소송
법」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(처분 등이 있는 날부
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)을 알려드립니다.

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

직인